



Jan. 2024

# 정부, 2024 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 발표: ③ 환경 분야

- 그린바이오산업 활성화, 전기신사업 추진,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을 통한 관련 산업 육성 -

기획재정부는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의 정책 345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발간된 책자 내용 중 환경 분야에서의 주요 정책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1. 그린바이오 산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그린바이오 산업은 세계적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관련 산업의 육성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과 농업 및 식품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어 국내 그린바이오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법의 주요 내용으로 우선 ① '그린바이오산업' 개념을 6대 분야(종자·동물용의약품·미생물·곤충·천연물·식품소재) 등 관련 제품·서비스 생산·판매 산업으로 명확화 하였고, ② 벤처창업, 전문인력 양성, 실태조사, 전담기관, 혁신기술 개발, 그린바이오 기업의 데이터활용 지원 등 신산업의 육성 지원, ③ 신산업 수요 견인을 위한 그린바이오 제품(생물농약, 건강기능식품 등) 공공 우선구매제 도입 등 추진, ④ 산업 성장 및 지역 확산을 위한 육성지구에 대한 첨단 연구·개발·생산 시설, 원료 공급시설 설치의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 2. 에너지 관련 변화되는 정책

#### 가.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활용한 전기신사업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 5. 1. 시행 예정인「전기사업법」개정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활용한 전기신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재생에너지 전기를 활용한 전기신사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전기차 충전수요 및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높은 변동성 등 전력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가 전력시장을 거쳐야만 했던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더라도 전기자동차충전사업에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한편,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ESS(Energy Storage System)에 저장한 후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 판매사업 또한 신설될 예정입니다.

#### 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2024. 6. 14. 시행 예정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도입을 통해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지역에너지로의 전환이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우선, 대규모 전기 사용 시설이 전력 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으로써 전력수요의 특정지역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등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또한, 지역 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분산에너지 사업자의 전기사용자에 대한 전력 직접 거래 등의 특례가 적용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러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의 지정은 우선 시·도지사 신청이 이루어진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문기관 검토를 거쳐 심의·확정됩니다.

# 3. 사업재편 지원범위 내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유형 추가

코로나 이후 디지털 전환 가속화 및 탄소중립 기조 확산 등 경제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촉진할 필요성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2024. 3. 29.부터 적용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개정을 통해 사업재편 지원유형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기존 사업재편 지원유형인 ① 과잉공급 해소, ② 신사업진출, ③ 산업위기지역 위기극복과 같은 세가지 유형에서 ④ 디지털 전환, ⑤ 탄소중립이 추가되어 사업재편 지원범위가 확대됩니다. 나아가 새로이 추가된 디지털전환 및 탄소중립 분야로의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의 경우 컨설팅, R&D, 자금 등 사업재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4. 환경부 정책 변화

#### 가. 환경영향평가제도, 대상·기준·절차 합리적 개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2023. 12. 19. 시행)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이합리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주요 개선사항은 아래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유형	주요 내용			
전략환경영향평가	민간투자사업 전략평가 적용 합리화, 약식전략평가 대상에 소하천 및 하천기본 계획 추가, 전략평가 협의내용 조정 절차 신설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요청 기한(10일) 규정, 변경협의 대상 명확화,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 치(ESS) 평가 규모 (10만kW)조정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업 소규모 평가 대상 제외, 연접규정에 따른 소규모 평 대상 판단기준 합리화, 변경협의 기준 합리화			
기타	초급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자격기준 조정			

위와 같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 절차를 합리화하여 민간투자의 촉진 및 재해 대응력의 강화가 이루어졌으며, ②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변경협의 절차 및 모호한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 지연을 초래하는 구조가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③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을 조정하여 환경영향이 경미한 경우 별도의 협의 절차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나.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도입

탄소중립 달성 및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시대적 화두인 상황에서 폐기물 규제개선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부는 2024. 1. 1.부터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였습니다.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각종 규제로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사업자에 대하여 실증과 상용화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으로는 우선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의 경우 최대 4년의 범위에서 법적 근거 없이 실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사업 결과 안전성 및 규제 정비 필요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제 담당 행정기관은 법령 정비에 착수하게 됩니다. 나아가 신기술·서비스를 활용한 사업에 대한 관련 규제를 알 수 없을 경우 규제 신속확인을 신청한다면 30일 이내로 규제의 유무에 대하여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 순환자원 지정·고시제 시행

2024. 1.부터 유해성이 적고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장려하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가 시행됩니다. 이번 순환자원 지정·고시제의 시행을 통해 개별 사업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순환자원'으로 일괄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품목은 함께 고시되는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모두 준수하는 범위에서 폐기물로 간주하지 않게 되어 폐기물 규제 면제 대상이 됩니다. 순환자원 지정·고시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항목	주요 내용			
제도의 개요	유해성이 낮고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에 대해 개별 사업자의 별도 신청 없이도 환 경부가 순환자원으로 일괄 지정하여 폐기물 규제 면제			
대상 품목	폐지, 고철, 폐금속캔, 알루미늄, 구리, 전기차 폐배터리, 폐유리			
준수사항	이물질 혼입 방지, 수출시 관련법 준수, 사전정보 등록 등 모든 품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준수사항 및 품목별 세부기준 준수 필요			

# 라.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촉진 제도」 시행

유기성 폐자원의 환경적·사회적 효용성을 높이는 재활용 방안인 바이오가스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지난 2023. 12. 31.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촉진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본 제도의 도입을 통해 유기성폐자원에 하수찌꺼기, 분뇨, 가축분뇨, 음식물류폐기물 등이 포함되며, 유기성폐자원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공공·민간에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부여하게 됩니다. 또한, 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시설에 대하여는 재정적 지원과 함께 바이오가스센터를 신설하여 기술지원, 운영 컨설팅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 마. 환경정보공개제도 개편

국제사회의 ESG 공시 도입 가속화에 대응하여 글로벌 공시기준과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정보공개제도 개편이 2024. 1. 1.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번 환경정보공개제도 개편에는 △ 기존 제조·공공행정 등 6개 유형에서 산업전반·산업기반 2개 유형으로 분류 단순화, △ 사업장 단위가 아닌 법인 단위로의 공개단위 전환, △ 공개시기 단축 및 공개항목의 변경 등이 포함될 예정이며 국내기업 준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계획입니다. 환경정보공개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유형	주요 내용				
유형 분류 단순화	기존 업종별 6개 유형에서 산업전반 및 산업기반(공공행정)의 2개 유형으로 단순화				
공개단위	기존 사업장 단위에서 법인 단위로 공개 단위 변경				
공개항목	온실가스배출량, 재생에너지 사용량 등 핵심 정보는 의무화하나, 비핵심 정보에 해당하는 환경관련 수상·협약, 환경오염 저감투자 및 기술도입 등은 제외·통합				
공개시점	글로벌 ESG 공시 시점 등을 반영한 공개 시기의 조정 (12월 → 8월말)				
기업 지원	환경정보 측정 기초역량 강화, 측정·검증 방법론 마련, 온실가스 감축사업 연계 등 지원 책 강화				

## 5. 시사점

김도형

T. (+82) 2 6182 8723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올해 △ 그린바이오 산업, △ 전기신사업 분야, △ 디지털전환 및 탄소중립 분야, △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 산업 등을 중심으로 한 환경 산업에서의 관련 법 개정 등 여러 제도적 변화가 예정되어 있어 각 산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그린바이오 산업의 경우 이번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새로운 소재 및 기능성 물질 개발을 통한 수요창출 효과와 디지털 기술 활용에 따른 농업생산성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산업의 경우 환경부는 이번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촉진 제도」 도입을 통해 유기성폐자원의 적정처리를 유도하고, 화학연료(ING) 대체 및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처럼 2024년부터 도입되는 각 환경 산업에서의 정책 변화는 향후 그린바이오 산업,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활용한 전기신사업, 디지털전환 및 탄소중립 분야,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산업, 순환자원 관련 산업 등 관련 산업 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관련 산업의 이해관계자들은 새로이 도입되는 제도들을 기업 발전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 입법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는 수질·대기·폐기물·화학물질 및 토양오염 등 환경 구성 요소들에 관한 이슈들을 폭넓게 다루며, 풍부한 자문 경험 및 정책·제도/기술·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규제와 관련한 기업들의 여러가지 고민을 사전에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환경규제대응센터는 환경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및 환경 관련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환경 분야 관련 법률 리스크에 대한 전 주기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화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 (+82) 2 6003 7535

한수연

T. (+82) 2 6182 8343

전문위원	E. dohyungkim@yoonyang.com	파트너변호사	E. kwlee@yoonyang.com	파트너변호사	E. sooyh@yoonyang.com
<b>박상진</b> 수석전문위원	T. (+82) 2 6003 8543 E. psjin@yoonyang.com	<b>김민경</b> <sup>변호사</sup>	T. (+82) 2 6182 8546  E. mkkim@yoonyang.com	<b>장민희</b> <sup>변호사</sup>	T. (+82) 2 6182 8746 E. mhcng@yoonyang.com

이광욱